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관서

(구매기업용)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본인의 구매자금 결제를 위한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관을 함에 있어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체결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여신거래약관서(이하 “여신약관”이라 합니다)에 본 약정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 ① “기업구매자금어음”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한 판매기업이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과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말합니다.
- ② “인수”라 함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지급할 것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인수거절”이라 함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결제기준일”이라 함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이날까지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거나 자기자금으로 결제계좌에 결제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⑤ “MarketPlace(이하 “MP”라 합니다)”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장(e-Marketplace)을 운영하는 사업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시장을 말합니다.
- ⑥ “구매자금결제제도”라 함은 판매기업은 구매기업 앞으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하고 구매기업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인수 및 자금결제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⑦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구매기업중심)”이라 함은 구매기업의 구매내역 결제의뢰 시 은행이 판매기업의 추심행위를 대행하여 추심등록하고 구매기업이 인수 및 대출신청한 것으로 보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⑧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라 함은 판매기업이 추심의뢰후 구매기업을 대리하여 인수 및 구매기업명의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⑨ “B2B 구매자금결제제도”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판매대금의 추심행위가 MP 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금결제제도를 말하며, 매매계약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인수 및 구매기업명의 대출이 실행되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자동승인방식”과 구매기업의 인수 및 대출실행후에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승인방식” 및 “접수방식”이 있으며,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에 승인방식을 지정하여 MP 가 은행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⑩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MP 에서 체결한 거래품목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정보와 결제수단, 결제예정금액, 만기일, 지급승인방식 등의 대금결제정보가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말하며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겸합니다.
- ⑪ “인터넷뱅킹”이라 함은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기업인터넷뱅킹, CMS 서비스, FirmBanking 등 전자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제 2 조 (이용시간)

- ① 은행은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로 인한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3 조 (지급제시 명세의 통지)

- ① 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접수받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지급제시 명세를 본인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으로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같음하며, 보조적인 수단으로 FAX 통지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구매기업중심) 및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 B2B 구매자금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FAX 통지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 ② 제 1 항에 의해 정상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하고, 본인이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은행에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인수 및 결제)

- ① 제 2 조에 따라 은행이 통지한 기업구매자금어음 지급제시명세에 대하여 인수 또는 인수거절의 통지는 지급제시 명세상 결제기준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하기로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기일까지 은행에 인수 또는 인수거절의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거절된 것으로 봅니다.
- ③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본인을 대리하여 인수 및 본인명의로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④ B2B 구매자금결제제도의 자동승인방식인 경우에는 은행이 전자상거래 매매계약서를 MP 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본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기업구매자금어음을 인수 및 대출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명의로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⑤ 제 10 조의 구매대금 결제계좌에 입금된 결제자금(대출금 또는 자기자금)은 별도의 출금지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인출하여 판매기업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대출의 신청 및 실행)

- ① 대출의 신청은 서면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에 의해 신청하기로 하며, 기업구매자금어음에 의한 지급청구가 은행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양편닝기)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은 본인이 서면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지정한 대출일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며, 대출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기준일에 대출을 실행하여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 이용약정서상 본인이 신고한 결제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 ③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구매기업중심),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 또는 B2B 구매자금 결제제도중 자동승인 방식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1.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구매기업중심)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과 거래하는 판매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근거로, 본인이 작성한 구매내역을 인터넷뱅킹 등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은행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은행은 동 내역을 판매기업을 대행하여 추심등록하고 본인이 인수 및 대출신청한 것으로 보아 동 내역과 일치되게 대출을 실행하여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 이용약정서상 본인이 신고한 결제계좌에 입금한 후 자동으로 출금하여 판매기업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2.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를 이용하는 경우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를 약정한 판매기업이 판매대금 회수를 위하여 본인에 대한 구매내역을 인터넷뱅킹 등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은행으로 추심의뢰한 경우에 은행은 본 약정에 의해 본인이 인수 및 대출신청한 것으로 보아 동 내역과 일치되게 대출을 실행하여 본인이 신고한 결제계좌에 입금한 후 자동으로 인출하여 판매기업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3. B2B 구매자금 결제제도의 자동승인방식인 경우
B2B 구매자금 결제제도의 자동승인방식으로 MP 가 전송한 전자상거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은행은 본 약정에 의해 본인이 인수 및 대출신청한 것으로 보아 동 내역과 일치되게 대출을 실행하여 본인이 신고한 결제계좌에 입금한 후 자동으로 인출하여 판매기업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대출실행내역 통지)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를 이용하는 경우 및 B2B 구매자금결제제도의 자동승인방식인 경우에는 은행은 대출실행내역을 인터넷뱅킹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같음합니다.

제 7 조 (대출이자율 등)

대출이자율, 이자납부방법, 지연배상금율 등은 “여신약정”에 따르되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① 판매기업이 신용을 공여하는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판매기업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날까지 은행의 은행계정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대출금의 용도의 사용금지)

제 5 조에 의해 실행된 대출금은 지정된 구매대금의 결제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① 판매기업이 신용을 공여하는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을 공여하는 판매기업과의 구매대금 결제용으로만 대출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B2B)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MP 로부터 전송되는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에 의한 구매대금 결제용으로만 대출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대출금의 상환)

대출금 또는 원리금 상환기일 도래시 제 10 조에서 약정한 계좌에서 별도의 청구서없이 자동인출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구매대금 결제계좌 개설)

- ① 본 약정에 의한 구매대금의 결제는 아래의 결제계좌를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 ② 제 1 항의 결제계좌는 구매대금 결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여 구매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상환되지 않을 경우의 모든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은행에는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③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과 약정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의 이자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 11 조 (수수료 등)

- ① B2B 구매자금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상 본인이 수수료 부담주체로 지정되었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은 수수료 징구방법 및 대상, 시기,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자료의 제출)

은행은 구매자금대출의 취급상황 점검 및 한국은행이나 감독기관의 자료제출요구등필요한 경우 거래관련 증빙서류나 세금계산서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은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 (약정의 해지 등)

상당한 이유없이 기업구매대금 결제를 빈번히 지연하거나 인수거절하는 등 지속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약정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4 조 (정보제공 등의)

본인은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MP 및 판매기업에게 다음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판매기업에게는 구매기업에 대한 기업명(또는 상호명)정보, 약정 정보,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2. MP 에게는 구매기업에 대한 기업명(또는 상호명) 정보, 약정 정보,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 15 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인수한 기업구매자금어음에 관하여 허위·위변조, 작성오류, 제 3 자의 청구 등 의 사고가 있는 경우
 2.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를 이용하는 경우에 판매기업이 전송한 내역에 대해 본인자금으로 결제되거나 구매자금대출이 실행되어 결제된 건에 대해서 판매기업의 허위, 작성오류 등이 있는 경우
 3. B2B 구매자금결제제도의 자동승인방식인 경우에 MP 가 전송한 전자상거래 매매계약서에 대해 구매자금대출이 실행되어 결제된 건에 대해서 MP 의 허위, 작성오류 등이 있는 경우
 4.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가 은행에 전달된 경우에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이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경우
-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6 조 (효력)

본 약정과 여신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여신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의 합의)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본인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	-----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 _____ (인)
주 소 :